



의안번호	제139호
------	-------

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0. 10. 13.

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3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10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,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출연내용

가. 특례보증 내용

1) 논산시

-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
- 사업 성과분석을 통하여 연차적 지원

2) 충남신용보증재단

- 특례보증한도액 : 출연금의 12배까지 융자지원
- 보증비율 : 보증금에 대한 100%
- 보증수수료 : 연 0.8% 이내

나. 보증조건

- 1) 특례보증한도액 :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 3천만원 이내
- 2) 보증기간 : 최장 5년 이내

다.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

1) 법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- 「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」

2) 대상 :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
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(상시근로자 10명 미만)
- 기 타(상시근로자 5명 미만)

3) 출연방법 :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계좌이체

4) 출자기간 : 출자후 자금 소진시까지

□ 출연계획 (최근 5년 출연 현황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합계	100	100	200	200	300	300
출연금 (시비100%)	100	100	200	200	300	300

※ 특례보증 대출 요청 증가로 금년 출연금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 발생
(2019년 200백만원 →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0백만원씩 5년간 지원)

□ 관련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- 「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」

「지방재정법」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- 제7조(기본재산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 3. 기업의 출연금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「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5조(협약의 체결 등)**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,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.
- ②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<별표 1>

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다만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
표준산업분류	업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다만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